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3323
------	------

2025.11.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기업·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혁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변경함.
2. 조문의 구성을 당초 18조에서 6장 및 28조로 세분화하여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3. 시장의 ‘규제혁신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개선할 책무 등을 명시함.(안 제3조)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5. 시민·단체·공무원 등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의 요청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6. 규제혁신 정책의 신뢰도·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자문 및 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7.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혁신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안 제12조)
8. ‘공무원의 책임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무원에게 규제혁신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7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일상 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서의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던 동 조례를 서울시의 규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됨.

2. 서울시 규제개혁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¹⁾,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²⁾, 기업규제활동심의 위원회³⁾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 등에 미치는 각종 규제를 관리하였으나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완화기구를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1997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이러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와 규제의 원칙,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정부 규제 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1) 김영삼정부 출범과 함께 1993년 4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

2) 주요 경제행정에 관한 규제의 개혁정책 및 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1996년 7월에 설치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소속 기구

3)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를 위해 1993년 8월에 설치된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산부) 소속 기구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1998.11.16.)하여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 차원의 규제를 심사·정비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 포털을 통해 규제 사무를 등록 및 공표하고 있음.
- 이후 서울시는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촉발된 각국 간의 관세 전쟁 여파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등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소비침체에 대응하고자 시장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2025.1.14.),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 및 ‘규제철폐 100일’ 운영 (2025.1.3~4.12)을 통해 12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음(11.14.기준 152건 등록).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 체계적 관리 및 서울시 규제 관련 정책의 총괄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3급 상당의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규제의 심의·자문을 총괄하는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을 신설하였음(2025.7.1.).
- 그러나 민간의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심의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로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구조를 기존의 18개 조문에서 28개 조문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별로 총칙,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정비·혁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보칙에 이르는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의 성격을 규제정책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개정안 간 조문 구성의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조 규제의 심사 제6조 규제영향분석 등 제7조 의견수렴 제3장 규제의 정비·혁신 제8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규제 정비의 요청 등 제10조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및 기능 제11조 심사단 수당 등 제12조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4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제13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제5조 구성	제14조 구성
제6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실무위원회	제17조 실무위원회
제9조 회의	제18조 회의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9조 의견청취 등
제11조 간사	제20조 간사
제12조 수당 등	제21조 위원회 수당 등
	제5장 규제총괄관
제13조 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제22조 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제14조 규제총괄관 업무 등	제23조 규제총괄관 업무 등
제15조 규제총괄관의 임기	제24조 규제총괄관의 임기
제16조 규제총괄관의 수당	제25조 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제17조 규제총괄관 해촉	제26조 규제총괄관 해촉
	제6장 보칙
제18조 시행규칙	제27조 공무원의 책임 등 제28조 시행규칙

3.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례명 및 총칙 규정(안 제1장(안 제1조~ 안 제4조))

-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총칙규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는 “규제 개혁”이라는 용어를 “규제혁신”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현행과 변동 없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p> <p><u>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u></p> <p><u><신 설></u></p>	<p><u>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u></p> <p><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 ----- ----- ----- ----- <u>규제 혁신</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u>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사회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규칙 및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u></p> <p><u>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u></p>

	<p><u>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 먼저 조례명과 안 제1조를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을 “규제혁신”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규제기본법」은 두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고, 정책 현장에서도 혼용되고 있는바,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더욱이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법률·대통령령 등 공식 규정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⁴⁾, 규제혁신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⁵⁾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현행 법령체계를 참고하면 규제혁신이 종전의 규제개혁보다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음.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에서는 규제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일부 조문에서는 여전히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체계 내에서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조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용어 변경의 입법 취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혁신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⁶⁾를 인용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의도하는 규제혁신의

4)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제23조(규제개혁위원회), 제36조(규제개혁 백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1조 등

5)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임.

개념, 기존 규제개혁과의 차별성, 추진 방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기본원칙을 규제혁신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규제혁신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안 제4조는 규제사무의 등록과 공표 및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개정조례안 제4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간 비교 >

개정조례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 내용 · 근거 · 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 · 운영되는 시도 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 내용 · 근거 · 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
- 6)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 · 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 경제 ·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구체적으로 안 제4조는 시장이 규제사무를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공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규제정보시스템⁷⁾과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⁸⁾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공표하고 있으나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는 규제정보포털과 달리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방침이나 내부지침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총칙규정은 조례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조례의 구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동 개정조례안의 총칙규정은 용어 변경의 필요성, 법령체계와의 정합성, 조문 간 용어의 일관성, 규제 혁신 개념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안 제2장(안 제5조~안 제7조))

- 안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7) 서울시 행정망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정부 규제정보시스템과 연동됨

8) <https://scpm.seoul.go.kr/deregulation>

개 정 안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조(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조례·규칙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준 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 처리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안 제5조는 중요규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개선권고의 이행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심사 방법 및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2장의 제목은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인데 비하여 안 제5조는 그 내용상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아닌 기존의 규제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시에 실시해야 하는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의 고려사항,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규제 영향분석서의 연계 공표,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및 절차, 작성지침 등에 대한 규칙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음.
- 안 제2장은 규제의 신설 · 강화시의 심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안 제5조의 적용범위를 기준 규제까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요규제가 신설 · 강화될 경우’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규제의 정비·혁신(안 제3장(안 제8조~안 제12조))

- 안 제3장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제의 정비 · 혁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 정 안
제3장 규제의 정비·혁신
<p>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② 각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비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생활, 경제활동 등에 관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규제의 완화·폐지,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등 사항을 자문 및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단에 총괄 및 사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사단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심사단 수당 등) 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시장은 신산업·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특례 관계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생명·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산업·민생분야의 혁신성·안전성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범 운영기간 등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8조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이하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되,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을 추가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수립된 규제정비종합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던 내용을 제외하였음.
- 또한 실·국·본부장으로 하여금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소관 규제의 정비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음.

현행 조례 시행규칙	개 정 안
<p>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② 각 실·본부·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안 제9조는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정비 요청 활성화를 위한 공모 및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p>「행정규제기본법」</p> <p>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p> <p>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 ·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p>
--

- 특히 정비 요청 활성화를 위한 공모 및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조 근거를 규정하여 “규제철폐 100일”에 이은 상시적 규제 혁신 공모와 협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은 시민생활, 경제활동 등에 관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규제의 완화·폐지,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등의 사항을 자문·심사하는 자문기구임.
- 특히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는 통칭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로 대표되며, 이는 신산업이나 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는 “신산업”이나 “민생분야”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그 적용이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심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
- 한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은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식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서울시 방침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서울시 규제총괄관을 위원장으로 5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침을 통해 위원회를 신설·운영한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설치 근거를 「행정 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기구”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미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심사기구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위원회를 두고 있고 특히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은 그 기능과 역할이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중복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3장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산업” 등 사용 용어의 불분명함과 중복 자문기관 설치로 인한 위법성 논란이 우려됨.
- 더욱이 규제혁신 자문심사단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의 역할분담 및 위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규제 관련 행정 절차에서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총괄관(안 제4장 및 제5장(안 제13조~안 제26조))

- 안 제4장 및 제5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총괄관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문 구성 및 내용과 거의 동일함.
-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한 안 제14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에 규제총괄관이 추가되고, 규제총괄관의 위촉(조례 제22조), 업무(조례 제23조)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규제혁신”으로 변경되었음.

9)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규제총괄관의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¹⁰⁾ 추가와 관련하여, 규제총괄관은 공무원인 다른 당연직 위원들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고, 현임 규제총괄관이 안 제10조에 따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바,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규제총괄관 개인에게 서울시 규제정책과 관련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보칙(안 제6장)

- 안 제27조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면책하도록 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 다만 이러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면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10) 당연직 위원의 신분은 특정 직위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함.

VI. 수정안요지

1. 수정이유

- 조례명 및 개별 조문에서 혼용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이라는 용어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정의함.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설치 및 운영은 유사·중복되는 자문기구의 설치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수정안의 주요내용

- 조례명 및 개별 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일원화함.
- “규제개혁” 등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등을 추가함(안 제15조 (종전의 안 제17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23
----------	---------

제안년월일 : 2025년 11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명 및 개별 조문에서 혼용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이라는 용어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정의함.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설치 및 운영은 유사·중복되는 자문기구의 설치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례명 및 개별 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일원화함.
- “규제개혁” 등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등을 추가함(안 제15조(종전의 안 제17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규칙 등”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규제의 심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규제의 정비 · 혁신”을 “규제의 정비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각 실·본부 · 국장”을 “시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심사단”을 “위원회”로 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규제의 신설 · 강화 등”을 “규제개혁에 관한”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규제정비”를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산업 · 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13조 앞에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1조 앞에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으로 하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규제총괄관”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제혁신의 전략수립과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으로 하며, 제22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규제총괄관”을 신설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중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혁신”을 “규제개혁”으로 하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단에 총괄 및 사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심사단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1조(심사단 수당 등) 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삭 제></p>
<p><u>제12조(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 ② (생략)</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u> <u>④ (생략)</u></p>	<p><u>제10조(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u> <u>③ -----</u> <u>-----</u> <u>위원회-----.</u> <u>④ (개정안과 같음)</u></p>
<p>제4장 규제개혁위원회</p>	<p>제4장 규제개혁위원회</p>
<p><u>제13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u> <u>시장은 중요규제의 신설·강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둈다.</u></p>	<p><u>제11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u> <u>-----규제개혁에 관한-----</u> <u>-----</u> <u>-----위원회-----.</u></p>
<p>1. ~ 2. (생략) <u>3.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u> <u>· 시행에 관한 사항</u> 4. ~ 5. (생략)</p> <p><신설></p> <p>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1. ~ 2. (개정안과 같음) <u>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u> <u>-----</u> 4. ~ 5. (개정안과 같음) <u>6.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u> 7. -----</p>

개정안	수정안
<u>제14조(구성) ① ~ ④ (생략)</u>	<u>제12조(구성) ① ~ ④ (개정안 제14조와 같음)</u>
<u>제15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생략)</u>	<u>제13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개정안 제15조와 같음)</u>
<u>제16조(위원장의 직무) (생략)</u>	<u>제1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안 제16조와 같음)</u>
<u>제17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15조(실무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신설></u>	<u>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u>
<u><신설></u>	<u>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의견서 제시</u>
<u><신설></u>	<u>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u>
<u>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u>	<u>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u>
<u>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u>
<u>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u>	<u>-----</u>
<u>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의견서 제시</u>	<u>-----</u>
<u>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u>	<u>-----</u>
<u>제18조(회의) (생략)</u>	<u>제16조(회의) (개정안 제18조와 같음)</u>
<u>제19조(의견청취 등) (생략)</u>	<u>제17조(의견청취 등) (개정안 제</u>

개정안	수정안
제20조(간사) (생략)	19조와 같음)
제21조(위원회 수당 등) (생략) 제5장 규제총괄관	제18조(간사) (개정안 제20조와 같음) 제19조(위원회 수당 등) (개정안 제21조와 같음) 제5장 규제총괄관
제22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u>규제혁신의 전략수립과 규제혁신 정책</u>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20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 <u>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u> -----. ② ----- -----. 1. ~ 7. (개정안과 같음)
제23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u>규제혁신 정책</u> 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 5. (생략) 6. <u>규제혁신</u>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u>규제혁신</u> 관련 전문가들과 정 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 -----. 1. ----- <u>규제개혁</u> --- ----- 2. ~ 5. (개정안과 같음) 6. <u>규제개혁</u> ----- ----- 7. <u>규제개혁</u> ----- ----- 8.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24조(규제총괄관의 임기) (생략)	제22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개정안 제24조와 같음)
제25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생략)	제23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개정안 제25조와 같음)
제26조(규제총괄관 해촉) (생략)	제24조(규제총괄관 해촉)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장 보칙</p> <p><u>제2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u> (생략) ② -----<u>규제혁신</u>----- ----- -----.</p> <p><u>제28조(시행규칙) (생략)</u></p>	<p>안 제26조와 같음)</p> <p>제6장 보칙</p> <p><u>제25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u> (개정안과 같음) ② -----<u>규제개혁</u>----- ----- -----.</p> <p><u>제26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규제개혁”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조례·규칙 등”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기업

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규칙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심사

제5조(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조례·규칙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 처리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의 정비 등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정비의 요청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정비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기업 등을 대상

으로 공모하거나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① 시장은 신산업·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특례 관계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생명·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산업·민생분야의 혁신성·안전성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범 운영기간 등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1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규제총괄관, 규제개혁 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 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맡는다.

제1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총괄관

제20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 언론 · 연구기관 · 교육기관 · 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5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